

질의 · 서면 답변서

질의	김진석위원	답변	평창군수(문화관광과장)
회의	제62회 평창군의회(정기회)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		

〈 질의요지 〉

- 감자큰잔치 부지 년간임대 및 영농중단조치 등 예산절약 방안

〈 답 변 〉

- 감자큰잔치 행사장부지현황(총6필지 28,268㎡, 8,551평)
 - 상지학원소유 : 횡계리 661-29번지의 2필지 22,855㎡(6,913평)
 - 락대웅 소유 : 횡계리 342-12번지의 1필지 4,336㎡(1,312평)
 - 국 유 지 : 횡계리661-103번지 1,077㎡(326평)

- 토지소유자 요구사항
 - 국유지를 제외한 사유지5필지 27,191㎡(8,225평)를 지방재정법 제92조 및 평창군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의 1,000분의25를 요구
 - ※ 27,191㎡ × ㎡당136,000원 × 25/1,000 = 92,449,400원

- 공익축제(감자큰잔치,대관령눈꽃축제)임을 감안하여 농경지 임차료로 임대차 협의
 - 횡계지역 최고수익작물인 당근재배를 가정하여 평당1,300원씩 임대차 계약
 - 임대차기간 : 98. 7. 1 ~ 99. 6. 30(1년간)
 - ※ 27,191㎡(8,225평) × 평당1,300원 = 10,692,500원

- 임대료 금액산정을 농경지임차료 수준으로 협의하였을뿐 행사장부지에 작물 파종등의 행위는 일체 없기로 협의되었으며, 현재의 계약조건이 예산절약의 최선책이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